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활동 지원 방안 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청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카. 청년활동 지원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용하는”을 “남용한 것이 확인된”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중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 차. (생 략)</p> <p><신 설></p> <p>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구”라 한다) <u>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p> <p>4. (생 략)</p> <p>③ (생 략)</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위원회를</u> 둔다.</p> <p>② (생 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p>	<p>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차. (현행과 같음) <u>카. 청년활동 지원</u></p> <p>3. ----- ----- <u>청년정책위원회</u> -----</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 5.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6조(지원 사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위촉직 위원 -----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 위촉직 위원-----

-----.

1. (현행과 같음)

- 2. -----
남용한 것이 확인된 -----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촉직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적·재정적 -----.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생략)

<신 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및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
-.